

1. 개정이유

참전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 확인서의 기재 사항 중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,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 대상이 아니고,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행규칙 제8조의4에 ‘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’를 추가

- 확인서 상에 신청인 란은 삭제하지만,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할 예정

나.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

- 등록일자 추가

다.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,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00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7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‘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’

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참전유공자증 등) ③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. <u><신 설></u>	제5조(참전유공자증 등) ③ ----- ----- -----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2서식] <개정 2020. >

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 확인서

발급번호			
확인대상자 (국가유공자)	대상구분	보훈번호	참전구분
	성명	생년월일	등록일자
용도 및 제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제출처	

위 확인대상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직인

유의사항

- ※ 이 확인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확인

우	주소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	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	전자우편주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